

○ e-안심팩토링대출용 통합약정서(판매기업용) (구 하나은행) 개정 대비표

1. 주요 개정내용

구 분	개정 전	개정 후	비 고
약관, 약정서명	e-안심팩토링대출용 통합약정서(판매기업용)	e-안심팩토링대출용 통합약정서(판매기업용) (구 하나은행)	(구)하나은행과 (구)한국외환은행의 합병에 따라 전산통합 전까지 (구)하나은행에서 사용하는 약정서의 구분을 위해 약정서명에 (구 하나은행) 명칭 추가
약관, 약정서 内 타 약관, 약정서명	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	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 (구 하나은행)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(구 하나은행)	합병으로 인한 타 약관명 변경내용 반영

2. 개정 시행일 : 2015년 9월 1일

3. 기 거래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: 적용

(구)하나은행과 (구)한국외환은행의 합병에 따른 단순한 은행명 변경으로 고객의 권리의무에는 변경사항이 없으므로 기 거래고객에 대하여도 시행일 이후 적용